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음. 다만, 월중에 휴직발령을 받거나 복직을 할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공무상 질병휴직〉

-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등 전액 지급

휴직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 지침

(총무처 인가 12107-351, 1996.6.11)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7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일반병가는 연60일 범위 안에서, 공무상병가는 연18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승인 결정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반병가 60일과 개인의 법정연가를 사용하고도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부득이 일반질병 휴직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질병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요양승인의 결정통보를 받았다 할지라도 기왕에 적법하게 처리한 휴직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함(총무처 인기 200-697, 1983.3.8)으로써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지연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보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1996.6.11이후) 질병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요양승인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공무상 요양승인이 공상병가 180일, 일반병가 60일 및 개인의 법정연가 하가 일수를 경과하여 결정된 경우는 공상병가·일반병가 및 법정연가가 경과한 날에 휴직 처리함)하도록 하여 인사·보수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통보함

질의) 1년의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

회신)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다만, 복직 후의 근무상태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면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총무처 인기 12107-45, 1996.1.25.)

질의) 3년간 **공무상질병휴직**을 한 이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새로운 **질병휴직**이 가능한가?

회신) 동일한 질병에 대해 공무상질병휴직과 일반질병휴직이 각각 별개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휴직은 최대 2년 이내로 하되 질병·부상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함. 따라서 3년간 공무상질병휴직을 한 이후에 동일한 질병에 대해 추가로 질병휴직 사용 불가(교육부 교원정책과 -4410(2022.6.17.))

※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 후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교육공무원법**」제45조제1항제1호 개정, 2023.4.19.)